

# 재건축사업계약서

( 송파구 오금로 57길 3-13 명산빌라 )

2018년 7월 20일

“갑” : 가여동 20~10 명산빌라 강 [redacted] 위 5인

“을” : 시공사 (주)두정종합건설, 시행사 (주)두 정

## 송파구 오금로 57길 3-13 명산빌라 재건축사업 계약서

아래 사업의 사업 주체인 송파구 오금로 57길 3-13 명산빌라 6세대(이하 “갑”이라 한다.)와 시공사 (주)두정종합건설, 시행사 (주)두정(이하 “을”이라 한다.)은 명산빌라 재건축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상호간에 아래 내역 및 별첨 계약조건과 같이 약정 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본 표지 포함 17페이지의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“갑”의 연합원과 “을”이 기명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- 아 래 -

1. 사업의 명칭 : 서울시 송파구 오금로 57길 3-13 명산빌라 신축공사

2. 사업의 위치 : 서울시 송파구 오금로 57길 3-13

3. 사업부지 면적 : 210.5㎡

4. 사업의 내용 : 지하 1층, 지상 1층 피로티포함 6층 1개동 10세대  
건폐율 49.92% 용적율 : 196.04%  
건축연면적 약412.67㎡

※ 본 도면은 건축가설계도면이므로 “갑”의 요구시 변경될 수도 있음.

5. 사업의 방법 : “갑”의 소유 토지에 대한 도시형생활주택 공동시설의 준공시 기준으로 대물변제 공사임.

6. 공사비 지급 방법 : 기성 공정율에 따라 “갑”과 “을”이 합의하여 단계적으로 지급한다.

7. 공사기간 : 착공신고일로부터 약 8개월로 한다.

(2018년 월 일 ~ 2019년 월 일까지로 하며, “갑”의 이주 지연으로 인한 기간연장은 “을”이 상호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)

8. “갑”의 제공 면적은 사업설명회때에 제시된 건축허가 도면에 의거 연합원 세대간 정한 평형대로 무상 지급기로 한다.

9. “갑”과 “을”은 주택법 및 동법 시행령·동법 시행규칙과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및 규칙,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,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법률등 관련법령과 조합의 규약을 준수하여 계약 조건에 따라 당해 재건축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 되도록 상호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 계약을 이행하기로 한다.

10. 별첨서류 : 하단에 표기

2018년 7월 20일



“갑” 주 소 : 송파구 거여동 20-110 흥산빌딩 30층  
주민등록번호 : [REDACTED]  
상 호 : [REDACTED]  
성 명 : 강 [REDACTED]

“을” 주 소 : 서울시 송파구 [REDACTED]  
사업자등록번호 : 641 - [REDACTED]  
상 호 : (주)두정종합건설  
대 표 이 사 : 임 [REDACTED]



주 소 : 서울시 송파구 [REDACTED]  
사업자등록번호 : 658 - [REDACTED]  
상 호 : (주)두정  
대 표 이 사 : 우 [REDACTED]

